

제2차 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거 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 03.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제2차 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024년 ~ 2026년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제2차 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개 요

- 일 시: 2024. 2. 29. (목) 10:00
- 장 소: 의원간담회장
- 참석자: 의정비심의위원 8명 (2명 불참)

☐ 주요내용

- 2024년~2026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 연간 15,600,000원
 - 월 1,300천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00천원, 보조활동비 월300천원)

인천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2차)

일 시	2024. 2. 29. (목) 10:00 ~ 11:30		장 소	의원간담회장
참석현황	재 적	참 석		불 참
	10	8		2
안 건	(2024년~2026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고
위원장	의정비 심의위원 10명 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31일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시행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부터 2026년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토의하기 전에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주민 여론조사의 결과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 보고서와 회의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론조사는 2024년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19세 이상 서구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전화 면접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은 1번 문항 의정활동비 잠정 금액 월 150만 원이 적정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1번 적정하다가 43.5%, 2번 높다가 56.5%로 2번 높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2번 문항 잠정 금액이 높다라고 답변한 경우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1번 월 150만 원 미만이 4.3%, 2번 월 140만 원 미만이 1.6%, 3번 월 130만 원 미만이 23.9%,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4번 월 120만 원 미만이 62.8%로 4번 월 120만 원 미만이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참고로 회의 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의정비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 활동비에 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결정하면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건가요?	
위원장	간사님. 1차 회의 때 결정한 40만원 인상 150만원 금액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부정적으로 56.5%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금액 120만원 미만이 62.8% 나왔구요 그럼, 여기서 금액에 대한 절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회의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법률 조항에 따라 무조건 반영을 해야 하는 건지...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리는데 이거에 대한 절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이 여론조사에 한 거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간사	나누어드린 회의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안부의 가이드 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라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안부 가이드 라인에서는 “심의회 결정 금액이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다수 의견이 채택한 금액 범위보다 높은 경우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의회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다수 의견이 선택한 금액 범위에 대해 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위원장	간사님의 지금 이런 자세한 설명이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답변은 아니에요. 사실 직무 관련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관계나 법에 명시한 내용에 대한 결과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인지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의회나 서구청 주무 부서의 어떤 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측면이나 여러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거고 여론조사도 반영해야 하는거지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과 여론조사에 나온 금액을 잘 절충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해주셔야 그걸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할수 있는겁니다. 회의내용은 회의록으로도 기록이 되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생각을 정리하여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저는 간사님께 먼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이제 1차 회의할 때 그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럼 우리 설문조사를 할 때 19세 이상 인천 서구 주민 500분께는 월정수당, 연구비, 보조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설명이 좀 충분했을까요? 월정수당, 연구비, 보조비.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연구비 보조비를 포함해서 의정 활동비잖아요. 그런 항목별로 어떤 어떤 사용처가 있는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설문조사지 문항에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사	설문조사 보고서 16페이지 보시면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그 설문조사 문항으로 보서는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의정활동비가 어떤 항목인지는 잘 모르고 설문조사에 응하셨을 수도 있네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께 여쭙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2번 항목에 대해서는 150만 원 미만, 140만 원 미만, 130만 원 미만, 120만 원 미만. 네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여기서 만약에 5번 항목으로 동결이라는 항목이 있었으면 어디가 더 많이 물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질문드린 건 아니구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어림짐작했다시피 의정 활동비라는 항목에 대해서 올리자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90% 이상이 동결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서구 주민 43.5%는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게 맞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저도 결과를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기 5페이지 보면 가이드라인에 다수 의견이 선택하는 금액 범위 내로 인하하여야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론조사 답변을 하신 분이 500명인데 적정하다는 정확하게 218명이고요. 그리고 월 150만 원 미만 이렇게 퍼센티지로 보면은 500명 중에서 제일 많은 답변이 적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은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하신 분 282명 중에서 금액별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포가 월 120만 원 미만은 대략 한 177명 정도 보고요. 그리고 월 130만 원 미만은 64명, 그 정도 분포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굳이 이 금액이 282명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올리지 않는 게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답변으로 봤을 때 최대 500명 중에서 제일 많은 답변은 적정하다가 218명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고 좀 진행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분들 평균을 대략 내봤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 미만은 대략 140만 원하고 150만 원 그 중간이라고 보고 평균을 내봤더니 대략 한 132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본 결과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500명 중에서 적정하지 않다가 400명 이렇게 나왔으면은 압도적일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게 엇비슷하게 56%하고 44%는 큰차이가 나지 않으니 그거는 좀 감안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다른 통계표를 가지고 있는데 〇〇〇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바 충분히 공감대가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50만 원 적정하다는 퍼센티지가 43.5% 예요. 그 다음에 12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가 35.48% 나머지 130만 원, 140만 원. 이걸 빼놓고 최고-최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 150만 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금액이 여론조사에서 실시한 퍼센티지보다는 한 8% 정도 상회하는 퍼센티지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여론조사에 다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문구도 있고 이걸 우리끼리 토의해서 결정해야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입장도 곤란하고 결정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예요.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끼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〇〇〇위원	네 저도 오늘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랑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맞다 아니다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아니다에 대해서 그 퍼센티지를 곱해 가지고 인원수를 추정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은 주민분들이 선택하신 의견은 150만 원이 적정하다가 43.5%인 만큼 저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 5항 및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다수 의견을 다수의 주민들이 선택한 금액으로 저희가 정한다고 생각이 되어서고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56.5%가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218명의 주민 설문조사를 무시하고 120만 원 62.8%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의 좀 현명하신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〇〇〇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이게 물론 다수결이 150만 원이긴 하지만 응답자가 제일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과반도 살짝 과반이 안 넘었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어떤 평균 응답자의 평균을 도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또 무턱대고 56%의 의견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회의 때 저희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잠정 금액을 결정할 때 150만 원을 정하려고 하니 이거는 과반의 의견이 아니니, 다수결인지 과반인지를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수의 의견으로 다수결에 따르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도출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설문조사에도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건데요. 저희 위원회가 지금 1회차 2회차 모이면서 지난 회의 때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다수결에 따른다라고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이걸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결과물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오늘 위원회를 열어서 변경 가능한 겁니까?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법령도 있고 행안부 가이드 라인에도 나오듯 다수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이고 그 부분 안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원	여론조사를 무시하고요?	
간사	여론조사를 무시하면 안되죠 여론조사 결과가 기준이 되어야죠	
○○○위원	이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간사	여론조사결과를 넘어서서 결정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여론조사 결과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가이드 라인에서도 다수 의견이 선택한 금액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고
○○○위원	제가 처음 질문한 내용이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 5항에 있고 그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서 우리 의견이 주민 의견과 다르다고 했을 때 대답을 보면 그 범위 내로 인하해야하는데 다른 위원분들이 말씀하신 퍼센테이지상 150만원이 적절한거 같다고 판단하여 그 의견을 결정을 해서 올린다 해도 법령이나 행안부 가이드라인상에서 보면 우리가 올린 금액이 반영될지도 미지수인거 같은데 그거를 올려야 하나요?	
○○○위원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법하고 되게 밀접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라는 것이 딱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도 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서 적정하다라는 최대 다수의 분들이 선택하신 의견에 대해서 무시를 해도 된다는 항목은 없고 그 가이드라인에도 다수의 의견이 선택한 범위 내에서 선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석이 다른 거죠. 해석을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제가 보는 접근 방식은 이제 218명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위원장님 ○○○입니다. 제생각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없었다면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도 ○○○ 위원님과의 해석에 동의를 하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43.5%에 대한 이 주민 의견을 저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150만 원이 잠정 금액이 높더라면 그러면 얼마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적정하단의 의견을 내포하고 두 번째 사항을 해석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뭐냐면 주민 의견도 적정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고 그렇다면 150만 원 그러니까 금액이 높다면 150만 원 미만 140 미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130만 원 미만이 23.9%, 120만 원 미만이 62.8% 이니 130만 원 미만이 약 90% 정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150만으로는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정할 때 금지 사항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굳이 정한다면 130만 원으로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거를 지난 1차 때 회의하고 지금 2차 회의인데 명확하게 이 법령에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저희가 1차회의 후 의구심을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보니 지금 어떤 것을 따라야 될지 공무원들도 고심이 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결과만 따를거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왜하나 싶어요 지금에 와서도 여론조사 결과만 따라서 결정하면 되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왜 있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여기서 합의점을 찾는다면 간사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가능한지, 안 그러면 62.8%에 달하는 120만 원 미만으로 119만 원까지 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어요.	
간사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저희...	
위원장	잠깐만 이러지 마시고요. 공무원들은 여기 끼면 안되요. 복잡합니다. 우리들끼리 130만 원이다 140만 원이다 120만 원이다 정해서 일단 올려야해요 올려서 법적인 조항을 따질거면 법무팀도 있을거고 거기에 대해 법률자문 받을수도 있고요.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쭙본 이유가 그거예요.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나온 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조정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여쭙본 거예요.	
위원장	조정의 어떤 역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무팀에 자문은 구해볼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다수의 의견이 선택한 범위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런 다수 의견을 퍼센티지를 보면 150만 원짜리가 제일 많아요. 43.5%. 그다음에 120만 원 35.48%. 나머지 130만원, 140만원, 또 무응답 이런 거는 퍼센티지가 미미해요. 6~7%뿐이 안 되는데 그 다수 의견이라면 150만원짜리 우리 심의위원회 정했던 그 의견이 가장 커요.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문구 문항 질문을 하다 보니까 걱정 금액 120 이렇게 나온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금액을 150만 원 120만 원 중간 사이에 절충한 금액을 제시를 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법무팀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3차 회의도 한번 거치고요. 2차 회의 때는 그 정도의 의견 표출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그럼, 여기서 개개인의견을 표현을 해서 하는 것보다 걱정 금액을 각 위원님들이 뭐로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것인지,	
위원장	거수를 하던지 무기명투표를 하던지 결정하면 되는데 일단 거수로 하시죠~ 130만 원 나오셨잖아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고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의견 수렴한 자료를 잘 보시면은요. 지자체법이나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만 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높다라면 150이나 140이나 130이나 이것을 물어봤어요. 어쨌든 150이 적정한 거는 43%가 나왔지만 150은 안 된다는 이 결론이 1번문항에 있구요 150은 할 수 없고 그러면 140, 130 중에 뭘 해야 되느냐 120이 62.8% 나온거예요. 그렇다면 120을 해야 되느냐 이걸 아니라는 거죠. 또 설명을 드리면 130 미만으로 미만이 약 90% 예요. 130 미만이 23%고 120 미만이 62%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그렇게 해석하면 130으로 결정하는 게 맞고요. 140이나 150으로 결정을 하려면 어떤 뚜렷한 해석에 정확한 의견을 주셔야 돼요.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변호사분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어제 변호사 두 분께 좀 자문을 여쭙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의정비 심의 결정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150만 원이 적정하다는 주민 의견 218명을 의정비 심의 결정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디에도 이 부분에 대해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은 없다. 따라서 의정비 심의 결정 시 여론조사 전체 대상 인원 500명을 기준으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라는 자문을 제가 두 분께 좀 미리 구해왔습니다. 저희 또 이제 변호사 위원분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에서 또 따로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간사님.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1차 조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2차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고
간사	행안부 지침에도 나오고 저번 1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월 13일까지 결정하고 통보해야합니다. 회의자료에도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하고 설문조사 기간 모두 포함해서 대략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3월 4일 바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10일이면 3월 14일까지 걸린다고 할 때 통보 기간을 넘기기 때문에 이걸 좀 어렵고요. 또 다른 방법인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도 주민한테 공고 기간이 14일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상 불가능 합니다.	
○○○위원	이게 안되다고 공청회를 한다는 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고 그러면 애초부터 공청회를 했어야 되는겁니다.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마무리해야죠.	
간사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13일까지 기준금액을 결정해서 확정통보하지 않으면 현행 금액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위원	지금 다른 구 보니 의정 활동비가 110만원으로 결정한 곳도 있는데 아마 다른 구에서도 이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반영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구에서도 저희 같은 이런 150만 원이다 140만 원이다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여론조사에 의해 심의회 의견을 무시했다기보다는 그냥 여론조사 결과에 무게를 실어서 110만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쪽에서 140만 원이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40만 원이나 130만 원 올렸을 때 그게 의견 수렴에 반한다는 내용을 서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나요?	
간사	그렇게는 아니고 결정 사항 그대로를 공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라고 하면 이게 너무 과한 결정이다라고 행안부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정 조치가 내려온다고 하면 이미 소급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위원	제가 아까 말한거처럼 우선은 적정하다 의견이 500명 중에 43%밖에 안 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니까요. 150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현재 과반은 적정한 사람이 많다고 대답을 한거니까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이 설문조사가 150만 원이냐, 기존 110만 원이냐 이런 질의였다면은 이게 의견이 분분하지는 않을 텐데 그 두 번째 질문 보면 금액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62%니 뭐 이런 것들은 500명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282명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은 이게 150만 원이 좀 무리가 있다고 하면 그 중간선인 평균을 내서 대충 130만 원 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갑론을박 많은 시간 허비해가면서 해봐야 결과 도출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130만 원을 두고 우리 ○○○ 위원님도 아까 현재 1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를 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130만 원 적정성이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최고점과 최하점 가장 적정한 게 중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금액으로 2차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3차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떨지요?	
위원들	네	
간사	저희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3차 회의를 통해 최종결정을 하신다는 건지요?	
위원장	일단 결정을 해서 2차에서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도출이 되거나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또 다른 회의가 필요하다 하면 3차 회의를 한 번 더,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간사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아무튼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지금 10명 중 8분이 모여 주셔가지고 110만 원 120만 원 여론조사에서 상향되는 그런 금액과 150만원에 대한 43.5% 의견도 우리는 무시 못한다는 의견으로 중간 절충금액으로 13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금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간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월 130만 원으로 지금 금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들	네	
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 2026년까지 의정 활동비는 월 13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오늘 의결로 완전히 결정을 해요. 어떠십니까?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130만원으로 다수의견이 접수했는데 그렇게 이걸 상정을 해서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어디에 다시 상정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아니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실 것도 없이 우리 8명 참석자 전원이 130만 원 의견을 도출했다는 것이 결정됐다고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위원	지금 위원님들 의견 다수가 130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들	네	
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의정 활동비를 월간 130만원, 연간 15,600천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110만 원과 150만 원 중간을 이렇게 1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플러스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 의정비심의 회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도 적정하다. 근데 높으면 얼마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높다라는 그분들한테 150, 140, 130, 이런데 그 의견 중에 130 이하가 90% 예요. 그래서 저희가 130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자세히 얘기했지만 43.5%의 어떤 퍼센티지도 간과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도 흑과 백으로 논의를 한다면 호불호가 다 있는 거예요.	
간사	잠시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위원님들 죄송한데 여론조사 문항이 지금 3번 130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29만 원까지를 얘기를 한 건데요.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금액을 절충을 하는 거잖아요. 설문조사 의견으로 그대로 가지고 봐서 그 미만을 따지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하와 미만은 차이가 있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130만 원보다 높아야 된다고 응답한 의견은 236명이예요.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이제 절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30만 원 미만은 241명이고, 그리고 130만 원보다 높아야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러면 대략 236명이면 저는 130만 원이 그렇게 크게 비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간이니깐요. 그 인원 차이도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법령에도 범위 내에서 결정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그 범위 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정확하게 딱 금액이 딱딱딱 떨어져서 129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범위 내에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130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위원장	이하 미만이 되냐 이거죠. 수 미만은 금액이 밑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면 129만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29만 원으로 1만원 범위의 폭으로 생각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설명할 때 130만원 미만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고 130이면 140만 원 미만으로 또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30미만으로 129만원 해야 하는게 맞을 수가 있어요	
○○○위원	우리가 수치를 계산해보면은 130만 원 이하 미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 이하와 미만의 차이인데 130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아요	
위원장	그러면 이제 130만 원 이상 14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위원	최고의 130을 하든 129를 하든 같은 거 아닌가?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고
위원장	아니죠 미만과 이하는 차이가 있죠	
○○○위원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저희는 설문조사를 왜 이하라고 안 하고 미만을 했냐고 얘기를 다시 하고 싶고요. 그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 이제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13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130만 원이 문제가 된다면은 129만9,999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1차 회의 때 어떤 쪽으로 할 거냐 했을 때 1차 여론조사가 있었고 2차 공청회까지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자고 여론조사 쪽으로 택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에 나온 걸 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뒤집고 여론조사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게 우리하고 틀리다고 해서 우리는 130만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의견을 올렸을 때 그럼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우리가 반하는 거를 의견을 제시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반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법 자체를 어떤 해석을 달리해서 130만으로 절충해서 결정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아니요. 얘기하기 나름인데 지금 150만 원 미만과 150만 원에 그게 45.5% 예요. 그리고 150만 원이 43.5% 예요. 다수 의견이 이게 진짜 최종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동등하게 묶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20만원 미만이 60 몇 프로 나온 건데 금액적으로 세부적으로 가면 이게 다수 의견이에요. 150만 원이.	

발언자	발언내용	비고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우선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반하는 건 아닌데요. 해석이 있는데 이게 단어가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한 132만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해 보이고 하니까, 이게 잘라서 130만 원이 적당하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그럼 130만원으로 가시죠. 140만원 미만인데 우리 130만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걸로 하시죠 아까 논의한거처럼 ... 다시하겠습니다. 2024년에서 2026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월 130만 원으로 지급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위원들	네	
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 활동비는 월 130만 원, 연간 1,560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자료 보시면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금액을 또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회의 자료 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130만원 가지고 나눈다는 거죠?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고
위원장	네네 지난 현행은 90만 원이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고요. 보조활동비가 20만 원 110만 원이었는데, 지금 130만 원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이거 시간 끌 것도 없고요. 우리 20만 원 중에 10만 원씩 나눠서 줍시다. 100만 원 하고 30만 원으로 나누는 것으로 하죠?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위원들	네	
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100만 원, 보조활동비는 월 30만 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시죠?	
위원들	네	
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는 100만 원,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의결서에 결정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고 가/부 표시와 함께 자필로 각자 서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 활동비 지급 금액은 월 130만 원입니다. 연간 1,56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의정 자료 수집비 월 100만 원, 보조활동비 3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